



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

의안번호

제99호

**논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 
운영지원 조례안**

제 출 자	서원 의원 외 4명
제출연월일	2023. 6. 8.

# 논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

의 안 번호	제99호
--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06. 08.

대표발의자 : 서원

공동발의자 : 김남충, 조용훈,  
이태모, 윤금숙

## 1. 제안이유

논산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,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설립 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 ~ 안 제7조)
- 다.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- 라. 사업계획서 및 검사등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, 안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 
「민법」 제32조
- 나. 조례안예고 : 2023. 6. 8. ~ 6. 12.( 5일간)

## □ 조례안

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

# 논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논산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,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 및 주소) ① 논산시 농어업회의소(이하 “회의소”라 한다)는 논산시 농어업인이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논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둔다.

제3조(운영)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
제4조(지원)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.

제5조(재원조성)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회원의 회비
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
3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
4. 기관·단체·후원인의 출연금품
5. 그 밖에 수익금 등

**제6조(사업)**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농어업 관련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
2. 농어업 관련 조사 및 연구
3.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
4. 농어업에 관한 정보·자료의 수집 및 제공·간행
5. 농어업에 관한 상담·교육 참여
6.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·알선
7. 농어업에 관한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
8.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, 간담회, 전시회,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
9.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
10. 농어업·농어촌 인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
11. 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12. 관내·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
13.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**제7조(수익사업)** 회의소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**제8조(업무위탁 및 운영지원)** ① 시장은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**제9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** ① 회의소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

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보고 및 검사 등) 시장은 회의소의 업무·회계·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서원 의원 외 4인

**□ 「지방자치법」**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**□ 「민법」**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